# 군산산북초등학교 학교규칙

제정 2002.12.26.

개정 2005.09.28.

개정 2007.04.22.

개정 2011.04.13.

개정 2016.06.15.

개정 2017.04.06.

개정 2022.09.28.

개정 2023.04.04.

개정 2024.07.16.

## 제1장 총 칙

제1조【목적】이 학교규칙은 초·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군산산북초등 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【정의】이 학교규칙(이하 '학칙'이라 한다)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"휴업" 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.
- ② "수익자부담경비" 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.

제3조【명칭】 본교는 군산산북초등학교라 칭한다.

제4조【위치】 본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원산북2길 29에 둔다.

# 제2장 수업연한·학기 및 휴업일

제5조【수업연한】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. 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수업 연한을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.

#### 제6조【학년제·학기】

①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.

②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 두 학기로 나눈다.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,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,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#### 제7조[휴업일]

-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.
  - 1. 관공서의 공휴일(국경일, 공휴일)
  - 2. 학교장 재량휴업일
  - 3. 여름방학
  - 4. 겨울방학
  - 5. 학년말방학
  - 6. 토요휴업일
-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제3호, 제4호, 제5호의 방학 기간은 수업일수,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.
- ④ 제1항 각 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<mark>전북특별자치도</mark>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(이하 "교육장")에 이를 보 고하여야 한다.

### 제3장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

제8조【학급수】 본교의 학급수는 관활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.

#### 제9조[학생정원]

-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당해년도 학생배치계획에 의하여 매년 관할청이 통보한 학생정원으로 한다.
- ②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.

# 제4장 교육과정·수업일수·평가·수료·졸업

**제10조【교육과정**】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국가수준교육과정과 전라북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.

#### 제11조【수업운영】

-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.
-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공동교육과정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.
- ③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,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.
- ④ 학생의 흥미, 특성과 계절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및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거 학교 간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, 그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.
- ⑤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연 15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, 국내・외 구분 없이 연간 15일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나,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 사정으로 인한 초과 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
- ⑥ 학교장은 학생의 희망과 보호자의 동의에 의거하여 1개월(4주)이내의 기간으로 개인 교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.
- ① 학교장은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에 의거하여 2주일 이내에서 단체 교환학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험학습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
- ⑧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.

#### 제12조【교외체험학습】

-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사설학원,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거나,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.
- ② 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공휴일, 방학,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. 단, 연속 신청 가능 일수는 10일 이내로 제한한다.
- ③ 감염병 위기 경보 '심각'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'가정학습'을 포함한다.
- ④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, 필요시 반일(중식 기준 오전, 오후)도 사용할 수 있다. 단, 중식 전,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. (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,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)
- ⑤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.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.
- ⑥ 보호자는 가급적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(토·일 및 공휴일 제외)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하고,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한다.
- ⑦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.
- ⑧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임은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한다.(단,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현지 통신 사정 고려)

⑨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을 경과하여 결석하는 경우 전화 또는 가정방문을 통하여 학생의 안전을 확인한다.

제13조【출결처리】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.

-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.
  - 1. 천재지변, 법정 감염병(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)
  - 2.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
  - 3. 전출・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
  - 4.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
  - 5. 가족 및 친 · 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
  - 6.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, 초·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,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,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에서 33조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
  - 7.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(월 1일 출석으로 인정, 지각·조퇴·결과 3회를 1일로 산정)
  - 8.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

#### 제14조【수업일수】

-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.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,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,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.
- ② 재취학 편입 전입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다.

#### 제15조【평가】

- ① 학교장은 학생의 성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"학업성적관리위원회"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 한다.
- ② 평가는 교육과정 목표와 국가, 교육청, 학교 수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 목표 지향적으로 실시하며, 성적 산출을 통한 서열화의 목적이 아닌 참학력 신장에 중점을 둔다.
- ③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관리 및 성적 관리가 되도록 한다.

#### 제16조【수료 및 졸업】

- ① 각 학년의 과정의 수료 또는 전학년의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평가 성적을 산정하여 정한다.
- ②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수업일수의 2/3 이상으로 한다.
- ③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.

### 제5장 입학·전학·재입학·편입학·재취학·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

#### 제17조[입학자격]

- ①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아동으로 본교 통학구역 관할 동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.
- ②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

#### 제18조【입학시기 및 조기입학】

- ① 입학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.
- ② 학생의 재취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.
- ③ 초·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(2008.05.27공포)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장에게 조기입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#### 제19조[입학방법]

- ① 초·중등교육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.
- ③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초·중등 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장에게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.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「출입국관리법」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한 입학 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.
- 제20조【취학유예 및 휴학】 초·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 개정(2008.5.27공포)에 따라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장에게 입학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#### 제21조【전·입학】

- ①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아동은 매년 동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을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.
-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,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

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.

- ③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,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.
-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출을 추천할 수 있다.
- 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거류신고증을 제출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입 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.

#### 제22조【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 등의 학적 관리】

- 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초·중등 교육법 제13조(취학 의무) 규정에 의한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.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(※초·중등교육법 제14조,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)
- ② 면제 또는 유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이 최종 결정 (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사유를 확인한 후 보호자 신청 없이 결정가능) 한다. 학부모가 신청한 취학유예를 결정할 때, 아동의 질병이나 성장 부진 등의 사유는 의사의 진단서를, 행방불명 등의 사유는 읍·면·동장이나 학부모 소견서 등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.
-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하되 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.
- ④ 학교의 장은 장기간 국외에서 거주하는 아동에 대하여 3개월 이상 결석할 경우 정원 외관리를 할 수 있다.

#### 제23조【재입학·편입학·재취학】

- ① 학교의 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를 얻어 입학 또는 편입을 허락할 수 있다.
- ② 학교장은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동일 학년 이하의 학년에 학교장이 재취학을 허가할 수 있다. 이 때,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.
- ③ 그 밖의 전.편입학, 재입학 절차와 방법은 <mark>전북특별자치도</mark>교육청 전·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을 따른다.

#### 제24조【출석 독촉ㆍ경고 및 통보】

-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(보호자)에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한다.
- ② 독촉·경고 후 <mark>7일을 경과하거나</mark> 2회 이상 독촉·경고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거주지의 동장 및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학급 담임은 가정 방문을 통해 확인한다.

#### 제25조【의무교육관리위원회 조직】

- ①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, 미취학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,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, 그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  - 1.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
  - 2. 교감, 교무부장, 부장교사, 보건교사,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내부위원
  - 3.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,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중에서 1인을 반드시 포함하여 외부위원 구성
  - 4. 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 선출 직후부터 이듬해 신임 위원의 선출 직전까지로 함 (매년 3월 중)

###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

제26조【목적】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 제24148호, 2012.10.29.)에 따라 학교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27조(조기진급 • 조기졸업)

-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 하고자 하는 경우 1학년에서 3학년, 2학년에서 4학년, 3학년에서 5학년,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.
- ②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 5학년에서 조기졸업할 수 있다.
- 제28조【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기준】학교장이 제27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,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.
  - 1. 국어, 수학, 과학, 사회, 영어(1·2학년은 국어, 수학, 슬기로운 생활)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

- 2.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(IQ)가 140 이상인 자
- 3. 국가기관(중앙행정부처)이 주관, 주최한 전국대회에서, 학교장의 추천으로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

### 제29조【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】

-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(3월 말) 이내에 한다.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(4월 말) 이내에 한다.
-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③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(이하 "조기진급· 졸업대상자"라 한다)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.
- ④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조기진급·졸업·진학평가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 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만점의 80%를 넘어야 한다.
- ⑤ 과목 이수는 조기진급·졸업·진학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.
- ⑥ 조기진급자가 진급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사항이나 동의를 받아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.

#### 제30조【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】

- ① 학교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·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「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」제27조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.
- ② 학교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.
  - 1.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,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②, ④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.
    - ② 국어, 수학, 과학, 사회,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
    - ④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
- ③ 학교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30조 제1항에 따른 조기 진급·졸업·진학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.
- 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 후 7일 이내에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한다.
- ⑤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조기진급·졸업·진학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.
- ⑥ 상급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6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수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만점의 80% 이상이어야 한다.
- ⑦ 조기진급·졸업·진학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.

⑧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한다.

#### 제31조【조기진급·졸업·진학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】

- ① 조기진급·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진급·졸업·진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  - 1.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~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2.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,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.
  - 3. 교사는 교무부장, 연구부장, 각 학년 교사 등을 포함한다.
- ②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.
- ④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(除斥)된다.
- ⑤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⑥ 위원이 제④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 (回避)하여야 한다.
- ⑦ 조기진급·졸업·진학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
  - 2.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
  - 3.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
  - 4.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
  - 5.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

#### 제32조【조기진급 등 대상자의 업무처리】

- ① 조기진급 등 대상자가 속한 학급의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정리, 성적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② 조기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'이수인정'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이 규정 이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기진급・졸업・진학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따로 결정한다.

# 제7장 학생포상 및 징계

#### 제33조【학생생활인권규정】

- ①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.
- ②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·운영 한다.
- ③ 학교장은 학생 포상, 징계 외의 지도방법, 두발·복장 등 용모,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,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·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,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·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, 학부모, 교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#### 제34조【학생포상】

-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한 자, 학업이 우수한 자,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, 근면성이 뛰어난 자,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,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.
- ② 학생 포상의 종류,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35조【학생의 학교생활】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내용은 학생생활규정에 따른다.

### 제8장 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

제36조【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】수익자부담경비(현장체험학습비, 수학여행비, 방과후활동수강료, 청소년단체 활동비, 급식비 등)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ㆍ징수한다.

# 제9장 학생자치 및 학부모회 활동 조직 및 운영

#### 제37조【학생자치활동】

-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자치회를 둔다.
- ② 학교장은 학생자치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운영 규정을 제정·운영한다.
- 제38조【학생의 의무】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수업·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## 제39조 [학부모회의 설치]

- 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군산산북초등학교 학부모회를 둔다.
- ② 학부모회는 학부모총회에서 구성한다.

### 제10장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조직·운영

#### 제40조【개별화지원팀 구성 및 운영】

- ①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매 학년의 시작일 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 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.
-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해당학생의 보호자, 특수교육교사, 통합학급교사,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(필요한 경우) 등으로 구성한다.
- ③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마다 매 학기의 시작일 부터 30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④ 개별화교육팀 구성 및 운영, 개별화교육계획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따로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.

# 제11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

#### 제41조(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)

- ① 학교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.
- ② 학교 내 교육·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할청의 지침에 따르고,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.

# 제12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

#### 제42조(학업중단예방위원회)

- ①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,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-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「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」에 따른다.

#### 제43조 [학업중단숙려제]

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법(숙려기간, 참여 횟수,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)에 대한 사항은 「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」에 따른다.

### 제13장 보칙

#### 제44조【학교규칙 개정 절차】

- ① 학교장(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)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(이하 "학칙"이라 한다)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,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-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- ④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,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.

#### 제45조【시행규칙】

- ①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.
- ② 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·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, 기타 지침, 훈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
# 부 칙

- ① 이 학교규칙은 200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이 학교규칙은 200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- ③ 이 학교규칙은 2007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- ④ 이 학교규칙은 201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- ⑤ 이 학교규칙은 201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- ⑥ 이 학교규칙은 2017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.
- ⑦ 이 학교규칙은 2022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- ⑧ 이 학교규칙은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.
- ⑨ 이 학교규칙은 2024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